

#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번	안 호	319
--------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하게 됨에 따라
-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안제2조)
-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에 대한 규정(안제7조)
-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9조)
-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규정(안제10조)
-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규정(안제15조)
- 폐기물 처리업 협회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안제16조, 안제17조)
-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 공급 또는 판매방법 규정(안제18조, 안제19조, 안제20조)

- 폐기물 봉투 판매 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 규정(안 제21조)
- 판매소의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의 지정 취소등을 규정(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제16조

# 안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 (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폐성 쓰레기는 관급 규격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m' 이상)를 설치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 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뮤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동사무소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별표1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자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
4.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 시설의 대수 및 사용 지역
6. 수집 차량 확보 계획
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 메립지 수송 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산시의 관할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통록 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 제3장 쓰레기 봉투 관련사항

제18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짙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4과 같다.

제19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안산시 자치 단체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안산시 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1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5와 같다.

제20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6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 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은 동장. 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봉투 판매 대금 납기 및 정수방법) ① 판매소는 공급 받는 봉투량의 공급 대금을 매월 말 정산하여 월납으로 하며, 납기는 익월 10일로 하며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에서 판매할 봉투를 인수할 때는 미리 봉투 대금을 선납한 후 봉투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 판매업(이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 판매 대금의 채권 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자 준수 사항)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5조(보고 및 관계 대장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7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안산시 폐기물 수집 수료 등 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정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혜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혜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2인치 이상 12인치 미만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콘	264㎥ 형 이상 66㎥ 형 이상 66㎥ 형 미만	8,000 5,000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장농	120CM 장 1쪽 90CM 장 1쪽	15,000 10,000
침대	2인용 1인용	15,000 10,000
쇼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책상	양수, 대형 빈수, 소형	5,000 4,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캐비넷	모든 규격	4,000
파일 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웅접 세트	3인용 이상 3인용 미만	5,000 2,000
문갑,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이상 5단 미만	4,000 2,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기타 자전거, 선풍기 의자, 싱크대, 쌀통 및 이와 유사한 물건	개당	2,000

※ 그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별표 2)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지</li> <li>-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 종이컵, 팩</li> <li>- 상자류(파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 지상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적지 않게 함</li> <li>-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li> <li>-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li> <li>- 비닐포장지는 제외</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li> <li>- 비닐코팅 부분 제거</li> <li>-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li> </ul>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li> <li>-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li> <li>-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li> <li>-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li>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li> </ul>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기타병</li> <li>- 농 약 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li> <li>-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li> <li>-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li> </ul>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등 쇠붙이)</li> <li>-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li>- 위와 같음</li> </ul>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병</li> <li>- 합성수지 용기류</li> <li>- 일반가정용 생활 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 된 용기에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li> <li>-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li> </ul>

## (별표3)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2) 수수료자립도는 안산시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수수료자립도  $\times$  0.09로 산정함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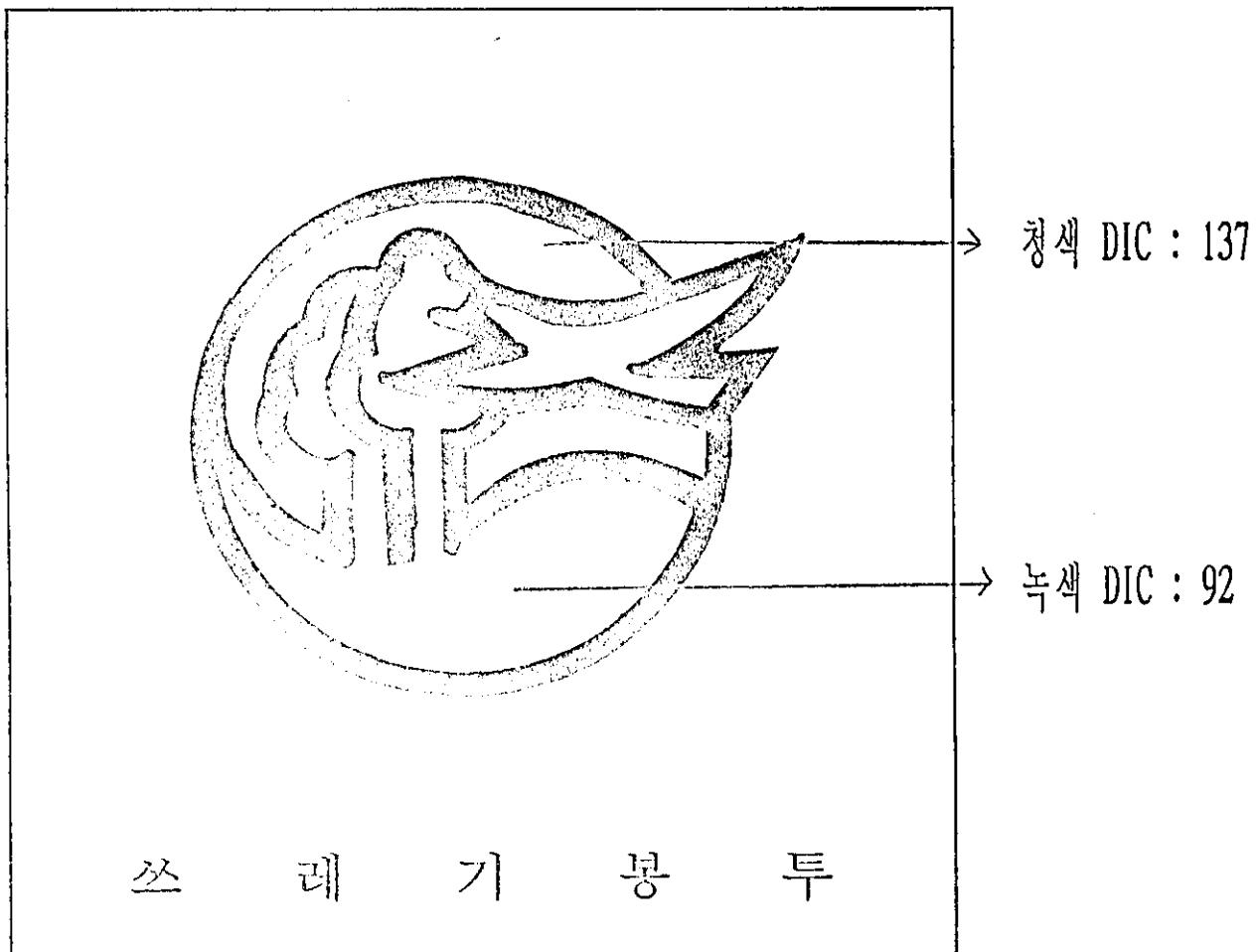
구 분	봉투 용량 (ℓ)	봉투 규격 (가로x세로, Cm)	호칭 두께 (mm)	봉투 가격
일 반 용	5	25 x 35	0.020	80원
일 반 용	10	33 x 40	0.020	150원
일 반 용	20	41 x 49	0.020	300원
공 일 공 반 용	50	56 x 67	0.030	750원
공 일 공 반 용	100	71 x 85	0.040	1,500원
공 일 공 반 용	100마대	71 x 85		2,000원

(별 표 5)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18 Cm	<p>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p> <p>안산시 마크</p> <p><b>쓰 레 기 봉 투 (20ℓ)</b></p> <p>- 일 반 용 -</p> <p>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내놓아야만 수거합니다.</p> <p>2.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p> <p>3. 이 봉투외 다른 봉투나 용기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p> <p>안 산 시 장</p> <p>※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청소과 (전화 81-1336-8)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쓰레기는 이 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p> <p>안산시 마크</p> <p><b>쓰 레 기 봉 투 (50ℓ)</b></p> <p>- 공 공 용 -</p> <p>1.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p> <p>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p> <p>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안 산 시 장</p> <p>※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청소과 (전화 81-1336-8)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p> <p>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	---------------------------------------------------------------------------------------------------------------------------------------------------------------------------------------------------------------------------------------------------------------------------------------------------------------------------------------------------------------------------------------------------	-------------------------------------------------------------------------------------------------------------------------------------------------------------------------------------------------------------------------------------------------------------------------------------------------------------------------------------------------------------

## (별 표6)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